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2029년까지 존속기한 연장

-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해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기한 5년 연장
-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개발, 교육·문화 등 분야 전문가 추가

대통령소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(이하 '농어업위', 위원장 장태평)는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*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「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.

* (현행) 법시행일('19.4.25)부터 5년간 존속 → (개정안) 2029년 4월 24일까지 존속

농어업위는 정부대표와 농어업·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,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,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·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이다.

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위의 존속기한이 5년 연장(~'29.4.24.)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어업위가 농어업계 및 타부처와 소통하고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또한,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'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'와 '농어업위'의 통합에도 힘이 실리게 되었다.

한편, 이번 개정안에 농어업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, 교육·문화,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*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농어업위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(현행) 농어업·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
 → (개정안) 관련 분야에 지역개발, 교육·문화,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포함

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
붙임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.

담당 부서	사무국 총괄기획팀	책임자	팀 장	이행은 (02-6260-1211)
		담당자	사무관	김한승 (02-6260-1212)



법률 제 호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2호나목 중 “분야”를 “분야(지역개발, 교육·문화,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”을 “2029년 4월 24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(이하 “종전의 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다만, 종전의 위원회 위촉 전문가 위원 중 결원이 있어 위촉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이 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</p> <p>가. (생 략)</p> <p>나. 농어업·농어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등 관련 분야의 전문 가 12명 이내</p> <p>④ (생 략)</p> <p>제13조(존속기한)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.</p>	<p>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<u>분야(지역개 발, 교육·문화,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을 포 함한다)</u>----- 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3조(존속기한) ----- 2029 년 4월 24일까지 -----.</p>